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¹⁾

1. 추진배경 및 목적

성폭력 피해자는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여성권익을 신장하고자 한다.

2.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의의

성폭력피해자의 특성과 성폭력피해의 맥락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성폭력범죄 사건의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데, 아직도 수사재판과정에서 수사관, 재판부의 인식에 따라 판결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성폭력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법률 정보의 부족과 적절한 대처의 부족으로 수사 재판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고소 이전부터 전국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상담·지원하면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성폭력피해자의 특성과 성폭력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지역의 뜻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형사수사와 재판 과정, 민사소송, 가사소송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될 경우에도 변호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성폭력피해자의 권익을 지켜왔다. 또한 정기적으로 상담현장 실무자와 위촉변호사 워크숍을 통해 법적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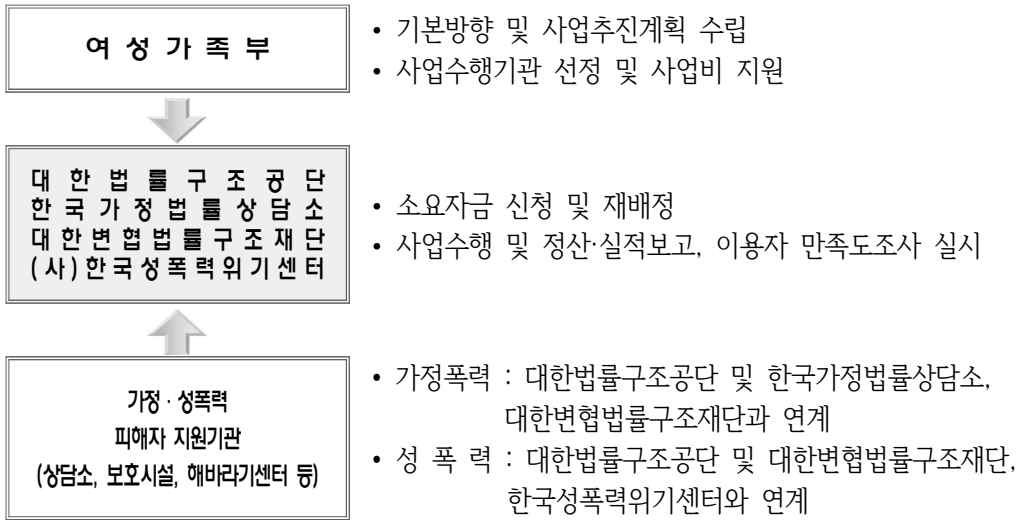
3. 사업 개요

1)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1)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타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기관 자체의 기준에 따름.

2) 사업추진체계



4. 사업대상

1) 사업지역: 전국

2) 구조대상: 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

※ 입증자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2호 서식]
-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 고소장, 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등

3) 구조대상 사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소송, 형사고소, 형사변호 등

5. 사업내용

1) 법률지원사업

- 법률상담

-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

- 형사소송 지원

-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피해자의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판절차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및 참여, 증거물

열람·등사 등이 가능하며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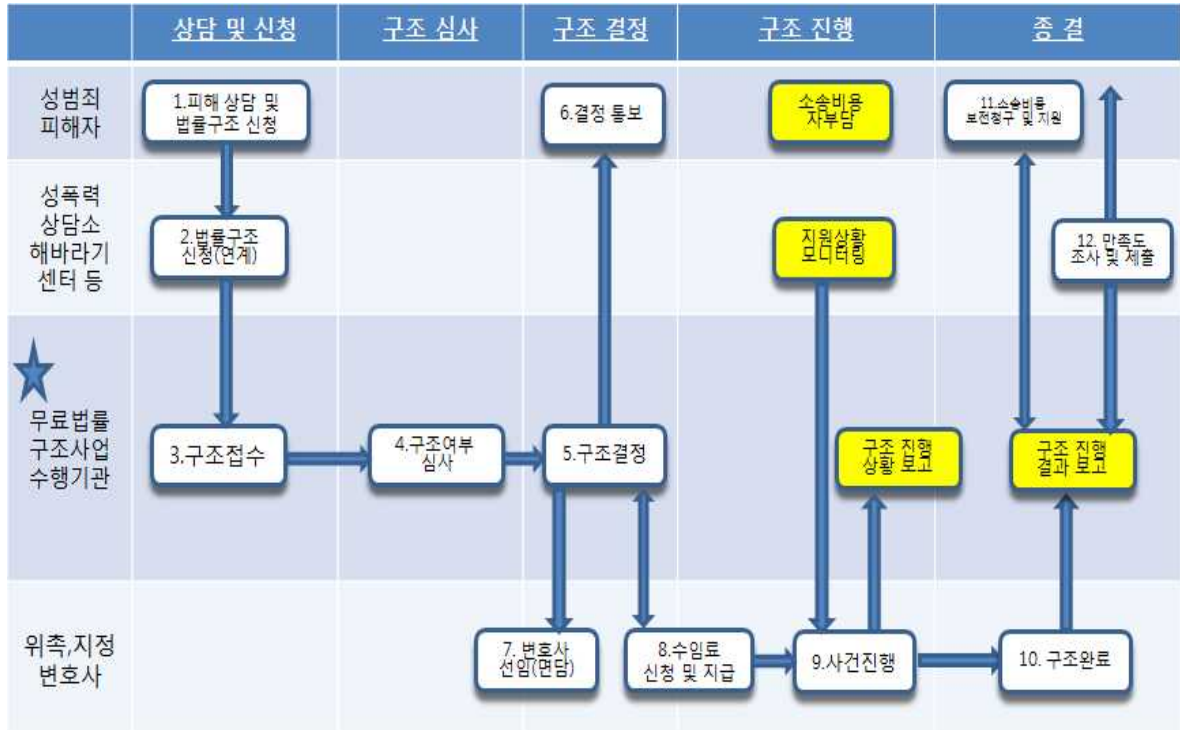
- 민·가사 소송 대리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2) 법률계몽사업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홍보활동
- 연계 상담소 및 변호사 등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워크숍
- 현지출장 생활법률강연 및 이동법률상담, 무료 대서 등

6. 법률구조

1) 진행 흐름도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소속 변호사제이므로, 7.8.9.10.11단계 차이가 있음.

2) 구조 절차

단 계	내 용
1. 피해 상담 및 법률구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가 상담소,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상담 시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법률구조제도 안내 피해자지원기관(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는 법률구조 신청을 받아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연계 신청 형사소송을 신청할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
2. 법률구조신청 (연계)	
3. 구조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구조사업수행기관은 구조 접수를 받아 구조 필요성, 경제적 자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조 여부를 심사
4. 구조여부심사	
5. 구조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및 지원기관에 구조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수행변호사 선임 구조 결정 통보를 받은 피해자지원기관(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는 변호사에게 법률구조를 위한 자료(피해자 인적사항, 사건 개요 등) 공유
6. 결정 통보	
7. 변호사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는 피해자 상담 등을 통해 사건수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수행기관에 통보
8. 수입료 신청 및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가 구조비를 신청하면 사업수행기관에서 수입료 지급
9. 사건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소송 수행은 선임변호사의 전 책임 아래 수행하되, 반기별 (6.12월)로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제출 (상담소, 센터 등) 지속적 피해자 사례 지원 및 모니터링 (피해자)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자부담 지출
10. 구조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송종료 후 변호사는 소송종료보고서, 판결문 등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11. 소송비용 청구 및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송비용 자부담분을 사업수행기관으로 보전청구 반드시 지원기관이나 지원 변호사가 청구
12.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소 등은 피해자에게서 수령한 만족도 조사지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소속 변호사제이므로, 7.8.9.10.11단계 차이가 있음.

7. 법률구조 신청 및 구조결정 심사

1) 신청기준

-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성폭력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지원하면서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업수행기관에 구조 신청을 할 수 있다.
-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사업수행기관에 직접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밖에 무료법률구조사업 전문 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가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업수행기관에 구조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신청서류

- (1) 무료법률구조신청서[제1호 서식]
 - (2) 이용자고지확인동의서[제3호 서식]
 - (3) 성폭력 피해 입증 자료 중 택1
 - ①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제2호 서식] ⇨ 본 센터에서는 필수서류에 해당함.
 - ②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 ③ 고소장, 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 ④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 ※ 수행기관별 별도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3) 무료법률구조결정 심사

법률구조수행기관은 아래 기준에 따라 구조결정여부를 심사한다.

(1) 공통 기준

-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 기타 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취지에 부합 여부 등이다.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선 구조할 수 있다.
 -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
 - ②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인 경우
 - ③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④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등

(2) 사업수행기관은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이 이미 구조를 받아 구조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회정의에 심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가 결정되어 구조수행에 착수한 후에도 법률구조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더 이상의 구조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3) 무고에 대한 형사 변호에서 실제 무고인 경우(본인이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구조수행에 착수한 후에도 무고임이 밝혀진 경우 신청기관에서는 사업수행기관에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구조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8. 변호사 선임²⁾

1) 변호사 선임 기준

(1) 대한법률구조공단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 중에서 선정되며, 해당 지역의 지부장 또는 출장소장이 구조결정 사건의 수임변호사를 지정한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위촉 변호사가 아닌 공단 소속 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실시하므로 자체 기준에 따른다.

(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① 재단의 구조수행변호사단 내에서 관할지 등을 고려하고,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ex. 여성변호사 신청 등) 재단 소속 변호인단 명부에서 수행변호사를 지정한다.
- ② 만약, 상담소 및 센터에서 변호사를 지정하여 법률구조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로 별도 위촉하여 사건을 연계할 수 있다.

(3)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①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촉 변호사단에서 피 해자 및 지원기관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연계한다.

※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전문변호사 위촉 절차

① 지원기관에서 전문변호사 추천

가. 지원기관의 자문 변호사

각 지원기관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의 경우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참여하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민사 소송까지 지원하게 되는 경우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행변호사로 별도 위촉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라고 판단되면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② 전문변호사 위촉 과정

변호사에게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전문변호사 추천서[별첨1]와 전문변호사 동의서[별첨2]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제출 → 사업수행기관 자체 심사 → 무료법률구조사업안내 및 위촉장 송부

③ 재위촉, 사임, 해촉

가. (재위촉) 무료법률구조사업 위탁 수행기관에서는 2년마다 활동의사를 확인하여 재위촉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계속 활동여부를 타진한다.

나. (사임) 질병, 장기여행, 변호사 자격 상실, 업종의 변경 등으로 위촉변호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임의사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임할 수 있다.

다. (해촉) 피해자나 지원기관에서 위촉변호사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사실 확인 후 수행기관 변호인단의 심사를 통해 해촉할 수 있다. (예: 불성실, 부당한 금품 요구, 배임, 동일 사건에 대한 가해자 변호 등)

만약, 해당 변호사가 법률구조 활동 중에 해촉되는 경우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반환한다.

9. 법률구조비 지원³⁾

1) 수입료

-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법적절차나 법리, 변호사 역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구조에 착수하며, 소장, 답변서 등 작성된 문서와 함께 무료법률구조비용청구서 [제5호 서식]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한다.
- 수입료는 심급별로 지원하되, 본안사건 1건 기준 100만원, 신청사건 기준 40만원으로 지급한다. 한 사건에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1인당 2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공익활동이므로 비과세임.

2)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 소송비용은 신청인(피해자)이 우선 부담하되, 구조소송 종료 후 무료법률구조비용청구서[제6호 서식]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제출 시 사후 보전(최대 50만원 안에서 실비지원)한다.
- 다만,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피해자 등 수행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선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소송이 종료된 후 신청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환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있을 경우 상환을 받아 피해자의 법률구조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소송비용 보전 신청 시 반드시 지원 변호사나 지원기관명으로 청구해야 한다.

3) 통역비(수화통역) 등 지원

- 성폭력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통역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우선부담하되, 추후 증빙서류 제출시 사후 보전(최대 50만원 안에서 실비지원)한다.
- 만약,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제적인 여건이 취약한 피해자 등 수행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내 자문위원단 논의를 통해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4) 법률상담비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다.

5) 구조지원 한도액

1인당 무료법률구조비용(수입료, 소송비용 등 포함)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0. 구조진행

- 1) 수행변호사는 6월 말과 12월 말에 무료법률구조사건 진행상황보고서[제8호 서식]를 작성

3)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위촉 변호사가 아닌 공단 소속 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실시하므로 자체 기준에 따른다.

하여 수행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2) 피해자는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진행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자부담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자부담 없음). 만약 신청인이 변호사 교체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교체 사유 및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3)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은 연계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사례지원하고 구조현황을 모니터링 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변호인 유의사항>

① 성폭력사건 무료법률구조사업 변호사는 피해자 및 피해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 욕구와 필요를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평소에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법의 변화와 추세를 파악한다.

- 피해자 특성 이해 : 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남성, 이주여성 등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
- 가해자 유형 이해 : 친족 내, 직장 내, 학교 내, 시설 내, 군대 내, 데이트상대, 모르는 사람 등
- 피해유형 이해 : 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 강간치사, 특수강간(집단/흉기), 준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 2013. 6. 19 이후 시행되는 성폭력 관련법

② 상담기관에서 피해자 상담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면서 법률구조신청서를 송부해 오면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 피해자를 면담하게 되면 피해자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난한 수사재판과정을 조력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과도하거나 막연한 기대를 구조화하기 위한 것이다.

③ 성폭력피해자는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때 구조 비용이 적어서 혹시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폐가 될까봐 문의도 제대로 못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과정에서 상담소 등 지원기관의 조율도 필요하지만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하는 내담자와의 첫 면담에서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의 역할, 법적 절차과정, 연락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의뢰한 상담지원기관과 역할분담을 하여 협력하면 유리하다.
법적인 절차에 대한 문의뿐 아니라 상담을 요청하거나 하소연을 하는 경우 이야기를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나 가족들이 피해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지원 외에 필요한 지원을 수시로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 단독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기관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의료적, 심리적, 복지적 지원을 담당하고, 변호사는 법적인 조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가 다른 일정으로 수사과정이나 재판에 동석하는 것이 어려울 때 상담자가 신뢰관계자로서 동행할 수 있고, 변호사 의견서와는 별도로 지원단체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협의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법적절차나 법리, 변호사 역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별첨3>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특성과 피해사건의 맥락을 파악한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형사절차나 법리적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고 대리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

⑥ 무료법률구조 진행 혹은 종료 이후 법률구조 수행변호사에 대한 내담자 측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지원상담소, 내담자, 위촉변호사에게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변호사가 법률구조 과정에서 수행변호사의 의무를 위배하거나 여타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변호사가 무료법률구조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면 수행기관은 자체 변호인단 및 심의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해당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수행변호사가 법률구조 진행 중에 해촉되었다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다른 수행변호사를 즉시 연계하여야 하며, 해촉된 변호사는 이미 받은 수임료를 수행기관에 해촉사유와 진행된 내용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반납하여야 한다.

11. 사건 종결 및 결과보고

- 사건이 종결되면 수행변호사는 사건종결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제8호 서식] 및 판결문 등을 사업수행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항소하여 심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종결된 사항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피해자는 사건종결 후 자부담했던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서[제6호 서식]와 증빙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한다.

12. 만족도 조사

- 사건이 종결되면 신청인은 무료법률구조사업 만족도조사[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지원기관이나 수행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 신청인이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작성된 만족도 조사지는 사업수행기관으로 우편 송부한다. (제목 : '무료법률구조